

무장애 건축 및 시설위원회 규정

제정 2019. 06. 24.

제1조 (목적) 경동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무장애건축구축에 관한 적정성을 기하고자 무장애건축 및 시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위원회 구성 등) ① 무장애건축 및 시설위원회(이하 “시설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사무처장, 장애소수집단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임명직 위원은 장애소수집단지원지원센터 직원을 포함하여 전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3조 (위원의 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무장애 건축 관련 유지관리
2. 기타 위호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 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,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설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시설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, 소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시설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, 소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소위원회 구성 사안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설위원회에서 그 운영기간을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소위원회 운영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시설위원회 위원임기를 넘길 수 없다.

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소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시설위원회 규정 및 경동대학교 각종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 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 (자문)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
다.

제10조 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